

2021년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전문직(회계사) 공개채용 공고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직원 공개채용 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7월 26일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사장

■ 채용인원

직급(직위)	직군	분야	채용인원	주요업무	관련직무
4급(과장)	행정	재무회계	1	· 재무 회계 및 경영 분석 업무 등	재무회계

<※ 재무회계 직무 주요과업>

- | | |
|--|--|
| · 수입 및 결산관련 회계자료 관리
· 장단기 재무관리계획 수립 및 운영
· 회계 결산 및 채권데이터 관리
· 자본금 관련 업무 및 자산의 감가상각
· 원가산정 및 분석 등 원가관리 업무 | · 월결산 기반 손익 분석, 이익금 처리
· 지출/수입 업무 총괄
· 회계관련 직원의재정보증보험 업무 총괄
· 법인카드 관리계획 수립 및 시행 |
|--|--|

■ 자격요건

- 공인회계사 자격 소지자
- 공고일 기준 만 18세 이상 만 60세 미만인 자
- 군필자 또는 면제자로 해외여행 및 건강상 결격사유가 없는 자
- 우리공사 인재상에 부합되는 자 (인성 / 창조성 / 전문성 / Globality)
- 공사 인사규정 제14조(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 가점사항 ※ 가점은 제출서류를 통해 확인함

- 가점대상: 취업보호(지원)대상자
- 가점사항: 전형별 만점의 5~10%
 - ※ 취업보호(지원)대상자의 경우 관련법에 의거 40% 이상 득점 시 가점 부여
 - ※ 취업보호(지원)대상자의 경우, 채용 분야별 선발인원이 3명 이하인 경우는 관련법에 따라 가점 미부여 다만, 응시자의 수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 채용절차 및 전형별 선발인원

원서접수 및 자격요건 확인	▶	1차전형 (인성검사, 역량면접)	▶	2차전형 (인성면접)
적격자 전원 선발		3배수 이내 선발		1배수 이내 선발

※ 최종합격자의 임용 포기, 중도퇴사 등으로 인한 결원 충원을 위해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동안 최종면접 결과 70점 이상 획득자에 한해 고득점자 순으로 예비합격자를 운영

■ 공고 및 지원서 접수

- 공고일시: 2021.07.26.(월)
- 원서접수: 2021.08.02.(월) ~ 08.06.(금) 18:00 까지
- 접수방법: 온라인 접수 ※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원서접수 사이트(www.jpdc.co.kr) 접수

■ 전형별 주요사항

- 원서접수 및 자격요건 확인
 - 블라인드 채용 실시에 따라 원서접수 시 가족관계, 성별, 출신지역 등의 기재를 금함
 - 원서접수 시 자격요건 확인을 위한 증빙서류를 함께 제출하며, 증빙서류를 통해 자격요건 확인
- 인성검사
 - 개인의 성격 및 특성을 심리적 과학적으로 파악 분석 (적·부 판정)
- 역량면접
 - 블라인드 면접, 다대다 면접
 - 평가기준: 적합성(조직, 직무, 동기), 신(身), 언(言), 서(書), 판(判)
 - 인성검사 적격자 중 최종점수 70점 이상 획득자 중 고득점자 순으로 배수 범위 내 선발 (인성검사 부적격자는 점수에 상관없이 불합격)
- 인성면접
 - 블라인드 면접, 다대다 면접
 - 평가기준: 사고와 자세, 청렴도 및 신뢰도, 책임감 및 적극성, 협업성 및 희생정신, 예의·품행
 - 최종점수 70점 이상 획득자 중 고득점자 순으로 배수 범위 내 선발
 - 동점자 처리방법: 취업보호(지원)대상자 → 장애인 → 다문화가정 → 북한이탈주민
→ 역량면접 고득점자

■ 서류제출 (※ 원서접수자 전원 제출기간 내 서류제출)

- 제출기간: 08.09.(월) ~ 08.13.(금) 18:00
- 제출방법: 직접방문 또는 등기우편 제출 ※ 등기우편의 경우 8/13 18:00 도착분에 한함
- 제출장소: 제주개발공사 임시사무연구동 C동 2층 인사교육팀 (제주시 첨단로 330 세미양빌딩)

구분	제출서류	비고
필수 제출	· 공인회계사 전문자격증 1부. · 주민등록초본 (병역사항 표기, 주민번호 뒷자리 미표기) 1부.	자격요건 확인
대상자 제출	· 취업보호(지원)대상자 증명서 · 장애인 사실 확인서 또는 복지카드 · 가족관계증명서(다문화가정 증빙) ·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동점자 처리 확인

- ※ 기간 내 미제출 시 불합격 처리되오니, 서류제출에 지장 없도록 반드시 사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모든 자격은 공고일 이전 취득분에 한하며, 제출서류는 공고일 기준 3개월 이내 발행분에 한함
- ※ 입사지원서 상 기재사항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최종합격하여도 취소되며, 향후 5년간 공사의 모든 채용시험에 응시할 수 없음

■ **전형 일정** ※ 예정 일정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전형별 공고 시 확정일정 반드시 확인

일정	전형일정	비고
07.26.(월)	· 공고	
08.02.(월) ~ 08.06.(금)	· 원서접수	
08.09.(월) ~ 08.13.(금)	· 서류제출	
08.10.(화)	· 1차전형 안내 공고	
08.14.(토)	· 1차전형(인성검사, 역량면접)	
08.21.(토)	· 2차전형(인성면접)	
08.24.(화)	· 최종합격자 발표	
08.25.(수) ~ 09.03.(금)	· 임용등록 및 결격조치	
09.06.(월)	· 임용(예정)	

■ **유의사항**

- 블라인드 채용에 따라 출신지역, 가족관계, 성별 등의 기재를 금지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불이익이 따를 수 있음
- 접수 마감일 18:00까지 접수하여야 하며, 접수 마감일에는 다수 인원의 동시 접속 등으로 접수가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며, 마감시간 이후에는 접수가 되지 않으니 여유를 두고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 접수 시 입사지원서에 입력한 핸드폰 번호로 접수번호가 송부되어야 접수가 완료된 것이오니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지원서 기재 착오·누락, 연락 불능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지원자 본인에게 있음
- 반드시 서류제출 기간 내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기간 내 미제출 시 불합격 처리됨
- 면접 진행 시 코로나19 확진자 또는 자가격리자 등의 경우, 응시가 제한될 수 있으니 개인 위생관리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 근무지는 제주도 지역이며, 입사 후 제주 지역 거주 및 근무가 가능하여야 함
- 입사지원서 기재사항 허위, 제출서류 위조, 인사청탁 등으로 인한 부정합격이 확인된 경우 합격이 취소되며, 향후 5년간 공사의 모든 채용시험에 응시할 수 없음
- 임용 예정일 이후 정상 출근이 가능하여야 하며, 정상 출근이 가능하지 않을 경우 임용이 취소될 수 있음
- 공사 사정에 따라 임용 후 발령 시 분야 및 직군 변경 가능함
- 해당 분야의 책임자가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
- 최종합격자의 임용 포기, 중도퇴사 등으로 인한 결원 충원을 위해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동안 최종면접 결과 70점 이상 획득자에 한해 고득점자 순으로 예비합격자를 운영
- 모집분야의 접수인원이 채용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 재공고 할 수 있음
- 제출서류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요청 시 반환하며, 180일 이후 불합격자의 제출서류는 폐기함
- 문의: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인사교육팀 (☎ 064-780-3514)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는 채용과 관련한 어떠한 인사 청탁을
일절 받지 않으며, 인사 청탁 시 응시자에게 불이익이 돌아갑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인사규정 제14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이 될 수 없다.

1.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6의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2.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8. 「병역법」에 따른 병역기피자

[붙임 2]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3호서식]

채용서류 반환청구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청구인	성명	수험번호
주 소		
반환장소 (주소와 다른 경우 기재)		
반환청구서류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제4조에 따라 위와 같
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귀하

공지사항
1.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라 신청인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요청하면 해당 사업장은 14일 이내에 반환요구서류를 발송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라 반환요구서류는 특수취급우편물을 통해서 전달받거나, 사업장으로부터 직접 전달받을 수 있습니다.
3.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2항에 따라 채용서류의 반환에 드는 비용을 청구인이 부담할 수 있습니다.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